

## 2018년도 중증장애인 및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선발 등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8년도 중증장애인 및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선발 등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 1.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8. 12. 21.)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별첨1.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18. 12. 21.)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6·7급	8·9급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선발단위 응시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아래 표 참조)

장애등급	장 애 유 형
1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2급	
3급	지체(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선발단위 외 시간선택제 선발단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지원은 불가능)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공 통】**

가. 응시자격 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2018. 12. 21.) 기준으로 판단함

### 【 경력의 범위 】

가.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선발단위별로 응시요건에 제시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됨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학위 취득 과정 중에 수행한 대학조교 경력, 연구경력 등은 불인정

나. '일반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8. 10. 30.) 현재 퇴직 후 중증장애인 선발단위 응시자는 3년, 시간선택제 선발단위 응시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선발단위 응시자 : 2015.10.29.부터 2018.10.30.까지 위의 "가"항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가능
- 시간선택제 선발단위 응시자 : 2008.10.29.부터 2018.10.30.까지 위의 "가"항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가능

### 【 학위·자격증의 범위 】

가.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함

나.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다. 최종시험 예정일(2018.12.21.)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라.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을 함께 제시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 가. 항목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 기 타 】

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8.11.12.)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나.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6.10.3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2018.11.1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서 인정됨.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해야함.

- ※ 사전등록 방법 : 본 공고문 6페이지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참고
-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의 경우만 인정

다.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어학성적,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한자, 글쓰기, 태권도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선발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 1]을 참조**

## 2.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 서류전형 기준 >

- ①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②직무성과
- ③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기타 실적 및 능력 ⑤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 □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면접시험 평정기준 >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3.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18. 11. 6(화) ~ 11. 12(월), 09:00~18:00
  - ※ 취소마감일시 : 2018. 11. 15(목) 18:00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은 11.5(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 안 내 사 항

- 응시원서용 기본서류[별첨 2] 첨부
  - 기본서류 : [별첨 2]의 한글(hwp) 또는 워드(doc)문서를 작성하여 첨부
    - ※ 첨부파일명은 "선발단위번호-응시자 이름"으로 부여 : 예) 101-홍길동
- 응시수수료(6·7급 : 7천원 / 8·9급 : 5천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표 출력 : 2018. 11. 19.(월) 이후 가능

- 기본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별첨2] 기본서류 작성서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한글(hwp) 또는 워드(doc) 중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 문서를 선택
  - 기본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본서류 중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

- 면접시험 응시에 특별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 응시자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의 예시와 본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신청란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와 '편의지원 제공 필요성, '신청내용' 등을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할 증빙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등을 확인 후 편의지원 내용이 최종 확정되며, 면접시험시 확정된 내용으로 지원 예정

<편의지원 내용(예시)>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지체장애 (상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자료작성시간 10분 연장
지체장애 (하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뇌병변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자료작성시간 10분 연장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시각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음성지원 컴퓨터
청각장애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지원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1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

- 대 상 자 : 2016. 10. 31.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최종일(2018. 11. 12.)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New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HSK, JPT) 시험의 성적을 사전에 제출하여 인증받으려는 사람

※ 이 외의 다른 어학능력검정시험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

-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 등록

※ 등록 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성적이 유효하게 등록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

- 등록기간 : 2018. 11. 1.(목)~11. 5.(월) 09:00~18:00

##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8. 12. 7(금)~12. 14(금) [12.14(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경력경쟁채용담당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제출내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관)
- ※ 증빙서류 제출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4.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8. 11. 6(화)~11. 12(월) 09:00~18:00
    - ※ 취소마감일 : 2018. 11. 15(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공고 : 2018. 12. 7(금)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8. 12. 7(금)~12. 14(금)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정 공고 : 2018. 12. 7(금)
  - 면접시험 : 2018. 12.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 25(금)
-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5. 신분보장 및 처우관련

### □ 신분보장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

### □ 보 수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결정

-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 허가) 규정 적용

## 6. 기타 주의 및 안내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해당 선발단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의거,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이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이내에는 전보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5, 8379)

## 7.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선발예정인원(요약)

☞ 세부내용은 [별첨 1]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참조

###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선발단위 구분번호	부처명	근무예정기관·부서 (근무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채용직무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요건
451	경찰청	경찰병원 총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9급 (일반행정)	외래 및 입원환자 접수·수납 및 보험심사·청구 관련 업무 등	1명	경력
452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세9급 (관세)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지재권위반사범 및 외국환거래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1명	경력
453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출심사팀 (경기도 과천시)	행정7급 (일반행정)	납품대가 지출심사, 선금/착·중도금 지출심사 등	1명	경력
454	특허청	운영지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7급 (일반행정)	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각종 제도의 연구·개선, 기관의 정책 집행·관리·평가 및 법령의 제·개정 지원	1명	경력 또는 학위

### □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

선발단위 구분번호	부처명	근무예정기관(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채용직무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요건
301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인천시 중구 소재)	농업6급 (식물검역)	식물검역 업무	1명	자격증
302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강원 속초시 소재)	농업7급 (식물검역)	식물검역 업무	1명	학위 또는 자격증
303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강원 속초시 소재)	수의6급 (수의)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 업무	1명	자격증
304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제주도 제주시 소재)	수의6급 (수의)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 업무	1명	자격증
305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 (경남 창원시 소재)	수의7급 (수의)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 업무	1명	자격증
306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제주도 제주시 소재)	수의7급 (수의)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 업무	1명	자격증
307	관세청	제주세관 휴대품과 (제주도 제주시 소재)	관세9급 (관세)	출·입국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	7명	경력
308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대전시 서구 소재)	공업6급 (화공)	화학분야 특허심사	2명	학위 또는 자격증
309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대전시 서구 소재)	방송통신6급 (방송기술)	방송통신 분야 특허심사	1명	학위 또는 자격증